

무배당 하나안심상해보험

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

확 인 서

무배당 하나안심상해보험을 변경함에 있어서 사업방법서, 약관,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적합하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계산이 정확함을 확인합니다. 끝.

2005년 9월 일
하 나 생 명 보 험 (주)
선임계리사 윤 기 수

사 업 방 법 서

(별 지)

사 업 방 법 서

1. 보험종목의 명칭

무배당 하나안심상해보험

2. 보험기간, 보험료납입기간 및 가입나이

보험기간	보험료납입기간	가입나이
10, 15, 20년 만기	5, 10, 15년납, 전기납	만 15세 ~ 60세

3. 보험료 납입주기 : 월납, 2개월납, 3개월납, 6개월납, 연납

4. 부가하는 특약

무배당 정기특약, 단체취급특약

5. 기 타

가. 배당에 관한 사항 : 배당하지 않음

나. 기초율 변경시 보험료 정산에 관한 사항

보험료 산출기초율이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도 보험료 인하나 보험금 증액 등을 할 수 있다.

다. 보험대상자(피보험자)의 변경에 관한 사항

보험대상자(피보험자)가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대상자(피보험자)를 변경 할 수 있다.

다만, 변경후 보험대상자(피보험자)는 변경전 보험대상자(피보험자)와 같은 성(性)에 한 하며, 회사는 보험대상자(피보험자)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대상자(피보험자)의 변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할 수 있다.

라. 보험료 할인

회사는 보험료가 금융기관 자동이체로 납부되는 경우에는 영업보험료의 1%범위내에서 할 인하여 영수할 수 있다.

마. 보험대상자(피보험자)의 직업 및 직종변경에 관한 사항

- 회사는 보험대상자(피보험자)의 직업 및 직무 위험별로 보험료를 달리 산출한다.

-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대상자(피보험자)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(계약 체결 당시의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없이 새로운 직업 또는 직무에 추가로 종사하게 된 경우와 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) 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(피보험자)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하고, 이 경우 보험대상자(피보험자)의 위험이 변경된 경우 “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” 에서

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정산하며, 계약자는 변경 후 위험 직무등급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.

- 계약체결시 보험대상자(피보험자)가 두가지 이상의 직업 또는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위험의 직업 또는 직무를 적용한다.
- 직업 또는 직무 위험별 구분은 회사에서 정한 “직업분류 및 위험등급분류표” 에서 구분한 위험등급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.

구 분	직업 및 직무 위험 구분		
	비위험	중위험	고위험
위험등급	(A급)	(B, C급)	(D, E급)

(별첨 제1호)

보험가입증서(보험증권)의 서식

(별첨 제2호)

보험계약청약서의 서식

(별첨 제3호)

부활(효력회복)계약청약서의 서식